

##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

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(이하 “스위스”라 한다)은,

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(이하 “자유무역협정”이라 한다)이 이 협정의 서명일에 서명되었음을 상기하며,

이 협정이 자유무역협정 제2.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## 제 1 조 적용범위

1. 이 협정은 다음 상품의 무역에 적용된다.

가.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(이하 “HS”라 한다) 제1류 내지 제24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V 및 V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품. 그리고

나.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I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품

2. 이 협정은 「1923년 3월 29일의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공국 간의 관세동맹조약」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, 리히텐슈타인공국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.

## 제 2 조 관세양허

1. 대한민국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. 스위스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.

2. 특혜 관세율이 이 부속서에 “B4”로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, 관세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서 동등한 11단계로 점진적으로 철폐되고, 후속 단계는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.

### 제 3 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

1.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적용된다. 그 부속서에서 “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”으로 언급된 것은 스위스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.
2. 이 협정의 목적상,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3.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2조에 불구하고,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당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로 간주되며 그러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충분한 공정 또는 가공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. 다만, 그러나, 공정 또는 가공은 자유무역 협정 부속서 I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.

### 제 4 조 대 화

양 당사국은 그들의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### 제 5 조 추가적 자유화

양 당사국은, 당사국간 농산물 무역의 패턴, 그러한 상품의 특수한 민감성 및 양측 농업정책의 발전을 고려하여, 그들의 농산물 무역의 추가적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. 일방 당사국이 특정 상품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, 타방 당사국은 추가적 자유화를 협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.

## 제 6 조 자유무역협정 규정

자유무역협정상의 다음 규정들은 양 당사국 간에 이 협정에 준용된다.

제1.2조 · 제1.5조 · 제1.6조 · 제1.7조 · 제2.5조 · 제2.6조 · 제2.7조 · 제2.9조 · 제2.11조 · 제2.12조 · 제2.13조 · 제10.1조 및 제9장

## 제 7 조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

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,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.

## 제 8 조 수출보조

일방 당사국이 제2조에 따라 관세양허의 대상이 되고 타방 당사국과 무역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보조를 도입하거나 재도입하는 경우, 타방 당사국은 그 시점에 발효되고 있는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까지 그러한 수입에 대하여 세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.

## 제 9 조 부속서 및 부록

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## 제 10 조

### 개정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.
2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개정은 나중에 비준서·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.

## 제 11 조

### 발효

1. 이 협정은 비준·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비준서·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되어야 한다.
2.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에 발효된다.

## 제 12 조

### 이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간의 관계

이 협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05년 12월 15일, 홍콩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을 대표하여

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

## 부속서 I의 부록

### 스위스 치즈

특혜 대우는 치즈가 첨부된 증명서 서식에 따라 적합한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함을 증명하는 진품 증명서 제출을 필요로 한다.

#### 가) 정의

이름 :	에멘탈* 또는 에멘탈러*(Emmental or Emmentaler)
모양 및 외관 :	프로피온산 발효를 통해 가공한 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. 치즈덩어리는 단단한 황갈색 외피를 가짐. 습한 환경에서 저장된 치즈는 갈색에서 검은색에 이르는 색깔을 띨 수 있음.
높이 :	16 ~ 27 cm
지름 :	80 ~ 100 cm
무게 :	75 ~ 120 kg
질감 :	탄력적이고 접착력이 없는 덩어리로 작은 것부터 중간 사이즈에 이르는 구멍을 가짐.
색상 :	아이보리에서 황색에 이른다.
맛 :	약간의 신맛, 단맛, 짠맛, 향긋함.
특징 :	건조품의 지방함량 45 ~ 55 % 수분 함량 최대 38 %

이름 :	스브린츠*(Sbrinz)
모양 및 외관 :	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. 치즈 덩어리는 둥글고 짙은 연노란색에서 금색을 가짐. 최소 16개월동안 숙성시킴.
높이 :	12 ~ 15 cm
지름 :	45 ~ 65 cm

\* “스위스산” 문구가 덧붙을 수도 있다.

무게 :	25 ~ 45 kg				
질감 :	약간 탄력적인 덩어리로 조금 부서지기 쉬우며 접착력이 있음. 약간 건조하며 상당히 까칠까칠함.				
색상 :	아이보리에서 연노란색에 이른.				
맛 :	과일맛, 향긋함, 약간 구운맛, 짠맛, 약간 단맛, 과일향이 나는 구운 치커리로 맛이 강조되며 파인애플 맛을 연상시킴.				
특징 :	<table border="0"> <tr> <td>건조품의 지방함량</td><td>약 45 %</td></tr> <tr> <td>수분 함량</td><td>약 35 %</td></tr> </table>	건조품의 지방함량	약 45 %	수분 함량	약 35 %
건조품의 지방함량	약 45 %				
수분 함량	약 35 %				
이름 :	그뤼에르* 또는 그뤼에르 달파쥐*(Gruyre or Gruyre d'alpage)				
모양 및 외관 :	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. 치즈덩어리는 흠이 없고 균일한 갈색을 띤 외피를 가짐. 모양은 균형이 잘 잡힘.				
높이 :	9 ~ 12 cm				
지름 :	50 ~ 65 cm				
무게 :	20 ~ 40 kg				
질감 :	표면은 부드럽고 조금 습하며 잘 부서짐.				
색상 :	아이보리에서 연노란색에 이른.				
맛 :	다소 짠맛이 남. 산 발효 과정과 저장실 숙성이 결합되어 약간의 과일 맛이 남.				
특징 :	<table border="0"> <tr> <td>건조품의 지방함량</td><td>49 ~ 53 %</td></tr> <tr> <td>수분 함량</td><td>34 ~ 38 %</td></tr> </table>	건조품의 지방함량	49 ~ 53 %	수분 함량	34 ~ 38 %
건조품의 지방함량	49 ~ 53 %				
수분 함량	34 ~ 38 %				
이름 :	전지 아펜젤러* 및 25% 아펜젤러*(Appenzeller full fat and Appenzeller $\frac{1}{4}$ fat)				
모양 및 외관 :	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. 치즈덩어리는 저장소에서 숙성과정을 통한 황갈색 외피를 가짐.				
높이 :	6 ~ 9 cm				
지름 :	30 ~ 33 cm				

\* “스위스산” 문구가 덧붙을 수도 있다.

b) 진품 증명서

첨부된 서식에 따른 진품 증명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된다. 사후 확인요청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진품 증명서

1. 수출자(성명 및 주소)	아래 명시된 치즈 증명서 ..... (HS 품목분류체계에 의한 코드번호 .....)
	일련번호 진품
2. 수하인(성명 및 주소)	3. 위임기관
주석	4. 송장 번호 및 발행일자
5. 화인과 수량-번호와 포장종류	6. 총 중량(kg)
	7. 순 중량(kg)
8. 위임기관 사증	
위에 언급된 송장은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명시된 스위스 치즈를 포함함을 증명한다.	
발행장소 및 발행일자 :	서명:
	위임기관 직인(인장):
9. 대한민국 세관당국용	